

- 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4조).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아.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
- 차.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32조)
-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서 승 환

●법률 제1186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이하 “주택임대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바,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70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전세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